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
발 의 자 : 김석기 · 김기현 · 김기웅
이인선 · 성일중 · 윤상현
김태호 · 강선영 · 김용태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,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국방부장관은 <u>5년</u> 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 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 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~ ④ (생 략)	제6조(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실태조사) ① 국방부장관은 <u>5년</u> 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 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7조(실태조사) ①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